



수 원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1377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박○○, 도○○
피고, 피항소인 ○○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임○○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구합7660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23.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각주 2)의 "A 주식회사에서"를 "E 주식회사에서"로, 제7면 5행의 "나목"을 "다목"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이 사건 규정의 해석상 화력발전에 의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에 국한되므로 폐열을 이용하여 연료의 연소 없이 생산된 2차 생산전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지역균형개발 재원 확보'라는 조세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당히 과세요건을 확장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근거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을 의미하고, 2차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배기가스열도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의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열



에너지에 해당하는 점, ② 2차 발전은 1차 발전과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1차 발전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제6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관하여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이라고 정하고 있어 연소를 위해 투입된 액화천연가스의 양, 발전과정에서의 열효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등과 관계없이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양, 즉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세법이 동일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더라도 발전효율을 높여 전력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증가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발전뿐만 아니라 2차 발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정유회사 공장과 같이 화력발전 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폐열발전소에서 생산한 폐열발전 생산전력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2차 생산전력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과세형평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정유회사의 폐열 발전설비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발전소와 같은 화력발전시설과는 달리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여 전력을 생산하지 않고 정유 과정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이용한 발전에만 관여하는 것이므로, 정유회사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결 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04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

판사 나 ○

판사 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04

[별지1]

피고 ○○시장의 원고 주식회사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내역

(단위: 원)

순 번	세목	처분일	귀속연도	당초 신고·납부 세액	감액 경정청구액	거부처분액
1	지역 자원시 설세	2021. 6. 23.	2016. 3. ~ 2016. 12.	627,200,900	203,023,010	203,023,010
2			2017. 1. ~ 2017. 12.	1,363,138,150	441,854,710	441,854,710
3			2018. 1. ~ 2018. 12.	1,533,018,640	491,300,290	491,300,290
4			2019. 1. ~ 2019. 12.	1,422,470,700	457,642,460	457,642,460
5			2020. 1. ~ 2020. 12.	1,449,722,360	453,974,900	453,974,900
6			2021. 1. ~ 2021. 2.	265,884,310	69,545,620	69,545,620
합계				6,661,435,060	2,117,340,990	2,117,340,990